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활동 범위 명시 등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46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활동 범위 명시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백승아의원 등 20인
2. 발의연월일: 2024. 7. 8.
3. 회부연월일: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활동 범위 명시 등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4(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교원의 교육활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u> <u>1.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u> <u>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u> <u>3.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u> <u>4. 제24조에 따른 수업과 그 준</u>

비

5.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관리

6.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7.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부모와의 상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한
연구활동

9. 그 밖에 법령에서 교원의 업
무로 정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
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
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특별한

	<u>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⑤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한다.</u> <u>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교원과 직원을 두도록 하고, 해당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¹⁾

교원의 임무에는 공통적으로 ‘학생 교육’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지 않음.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표 1]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구분 및 임무

구분		임무
교원	교장	교무 총괄, 민원처리 책임,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
	교감	교장 보좌, 교무 관리, 학생 교육, 교장 직무 대행
	수석교사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생 교육
	교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 교육
직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 그 밖의 사무

자료: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0조 내용 정리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처리로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교원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교원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수립된 교육활동 지원계획 하에 명확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즉시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만 수립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되 수립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수립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원계획의 명확한 수립을 위해 수립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

2)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립주기를 법률에 규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음.

「유아교육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0조의4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대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현재 수립·시행되고 있는 지원계획,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점검하여 중복되는 부분 등을 확인하고,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상 교육활동으로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안 제20조의4제2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³⁾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025년 5,400만원, 2029년 2,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4,200만원(연평균 2,84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3)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20조의4)	지원계획	32	-	-	-	-	32	6.4
	실태조사	22	22	22	22	22	110	22
합 계		54	22	22	22	22	142	28.4

주: 교육부의 기존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외)과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었던 연구용역비 및 수립 주기를 바탕으로 추정된 것으로 개정안 시행 후 실제 수립·실시 방법에 따라 결과값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수립·시행하는 교육활동 관련 기본계획과 중복될 수 있는 점, 학교급·규모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차이가 있는 점, 교육과정의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4)에 따라 교육감의 사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실태조사의 목적·대상 등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현재 시행되는 각종 교육활동 관련 조사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의 자료 제출 등 부담이 강화될 수 있는 점을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고려하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신설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의견수렴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 사례판단, 수사, 의견제시 등에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

개정안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적용될 경우, 개정안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교원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5)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활동이 규정된 개정안 제20조의4제2항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제2호),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제6호),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부모와의 상담(제7호)’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생활지도’의 방식으로 ‘상담’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이 포함되므로,⁶⁾ 개정안 제20조의4제2항에서 학생생활지도와 상담을 규정하는 각 호의 내용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원의 직무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제시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디지털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주요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교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점, 교육의 변화에 따라 교육활동의 범위도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교육활동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범위를 축소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는 입장임.

아울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규정된 내용 이외의 교육활동이 배제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으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가 타 직종으로 전가되어 학교 구성원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대한영양사협회는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의 전문성과 관련 없는 각종 업무들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영양교사가 교육급식 및 영양·식생활교육 업무에 전념하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